

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: 2005. 3.

제 출 자 :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위원회 구성과 전문가의 범위를 조정하여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함.

2. 주 요 골 자

- 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제5조(구성) 제1항중 "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"를
"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**13인이내**"로 하고
제5조제3항 중 "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,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
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"를
"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, **토목 · 건축 · 환경 · 전자통신 등 분야에
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**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
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"로 수정함.

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

구미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"를 "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이내"로 하고

제5조제3항 중 "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,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"를 "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, 토목, 건축, 환경, 전자통신 등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정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 (안)	수정(안)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사업집행용역 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. ~ 4(생략) 제4조(신설)	제3조(기능) 위원회는 용역과제선정 1. ~ 4(현행과 같음) 제4조(심의대상) 위원회의 용역과제 사전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사업집행용역은 대상에서 제외 2.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은 용역 금액10백만원 이상 3. 공사설계용역은 용역금액 30백만원 이상	제3조(기능) 1. ~ 4(개정안과 같음) 제4조(심의대상)..... 1 ~ 3(개정안과 같음)
제4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정보실장, 행정지원국장,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,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④(생략) 제5조 ~ 제11조(생략)	제5조 ~ 제12조(현행과 같음)	제5조(구성) ①..... 13인이내..... ②(현행과 같음)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정보실장, 행정지원국장,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3명, 토목, 건축, 환경, 전자통신 등 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④(현행과 같음) 제6조 ~ 제12조(개정안과 같음)